

경운대학교 대학혁신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재정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대학혁신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학혁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재정지원사업(중앙정부, 지자체) 운영의 총괄적 점검에 관한 사항
2. 자율혁신계획 상 특성화 방향에 기반한 투자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 성과에 대한 총괄적 평가·환류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회계 모니터링 실시에 관한 사항
5. 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의 운영 현황·성과에 대한 총괄적 평가에 관한 사항
6. 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 간 자원 배분의 적절성 및 개선 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각 처(본부)장, 주요 재정지원사업단장, 외부전문가, 재학생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총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결원으로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4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으로 의결한다.

제5조(행정지원) 위원회의 행정지원은 대학혁신원 미래전략본부에서 담당한다.

제6조(세부사항)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2022.04.18.>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